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80
----------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김종민 · 진선미 · 조계원
김승원 · 한창민 · 서미화
정일영 · 박균택 · 강준현
안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충분히 마련돼있지 않아, 노후화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함(안 28조제1항 및 2항 신설).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관리·처분)”을 “(관리·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을 “현물출자·대물변제의 범위·내용 및 철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등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1. 건물이나 시설물 등 공유재산이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건물이나 시설물 등 공유재산의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건물이나 시설물 등 공유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u>관리 · 처분</u>) ① (생 략)	제28조(<u>관리 · 처분 등</u>) ① (현행 과 같음)
<u><신 설></u>	②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단체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등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 거할 수 있다.</u> 1. <u>건물이나 시설물 등 공유재 산이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u> 2. <u>건물이나 시설물 등 공유재 산의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 ·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u> 3. <u>건물이나 시설물 등 공유재 산의 위치, 형태, 용도, 노후 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 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인정하는 경우</u>
② <u>일반재산의 현물출자 및 대 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u>	③ ----- <u>현물출자 · 대물변제 의 범위 · 내용 및 철거에 관한 사항</u> -----.